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80722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18.07.23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3.04.27

홈페이지:www.corerang.com

# [꼬레랑]

##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맛나푸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주식회사 맛나푸드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4-1, 2층(구월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032-471-333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부 / TEL : 032-471-3336

# 목 차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꼬레랑』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 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 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꼬레랑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4-1, 2층(구월동)					
주식회사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맛나푸드	2018.03.20		2018.03.20	윤원옥	032-471-3336	_		
	법인등록번호	13	34911-0082890	사업자등록번호	222-87-	-00843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와 특수관계인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윤원옥	꼬레랑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14-1, 2층(구월동)			
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원옥	032-471-3336	_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꼬레랑]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꼬레랑	-
상 호	꼬레랑 00점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2,797	106,996	5,800	451,154	-21,665	-20,945
2022년	101,012	95,023	5,988	507,274	-10,501	187
2023년	115,120	77,722	37,398	506,835	30,761	31,409

별첨:2021년~2023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형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OI =	취지이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윤원옥	대표이사	2018.03.20 ~ 현재	㈜맛나푸드 대표이사	사업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	--------	--------

000014 10.91 01.01	상근	비상근	0
2023년 12월 31일	1	0	2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최근 3년간 [꼬레랑] 이외의 가맹사업을 운영한 바가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공고일자 등록일자	출원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Transport (1) 1688 4000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가를 수령할 권리	2017.10.19 2018.03.22 2020.06.01	40-2017-0131814 40-2018-0027653 40-16107620000	한상희	2030.06.01 (2030.06.01)

- ▶ 당사는 상표출원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표 출원자로부터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a href="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꼬레랑]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8.05

### 2. [꼬레랑]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식회사 맛나푸드	꼬레랑	윤원옥	2018.05 ~ 현재	남동대로692번길 14-1,
				2층(구월동)

### 3.[꼬레랑] 업종

영업표지	업종				
꼬레랑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치킨			

##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개)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지역 전체 가맹점 직영점 가맹점 가맹점 전체 직영점 전체 직영점 전체 20 20 18 18 18 18 서울 1 1 1 1 1 1 부산 대구 \_ 인천 2 2 2 2 2 2 \_ \_ 광주 대전 울산 \_ 세종 경기 15 17 17 15 15 15 강원 충북 \_ 충남 전북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	_	-	_	_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꼬레랑] 가맹점 수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	1	0	1	4	20
2022	20	0	0	2	2	18
2023	18	1	0	1	3	18

## 6. [꼬레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직전 3년간 해당사업 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202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상한)		평균 (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²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18	130,450	7,367	252,000	21,000	50,000	3,300	_
서울	1	해당 없음	_	_	_	_	_	_
부산	_	해당 없음	_	_	_	_	_	_
대구	_	해당 없음	_	_	-	ı	_	_
인천	2	해당 없음	_	_	_	_	_	_
광주	_	해당 없음	_	_	_	-	_	_
대전	_	해당 없음	_	_	_	_	_	_
울산	_	해당 없음	_	_	_	_	_	_
세종	_	해당 없음	_	_	_	_	_	
경기	15	139,785	7,295	252,000	21,000	60,000	3,300	2곳 산정제외
강원	_	해당 없음	_	_	_	_	_	_

충북	_	해당 없음	_	_	-	_	-	_
충남	_	해당 없음	_	_	_	_	_	_
전북	_	해당 없음	_	_	_	_	_	_
전남	_	해당 없음	_	_	_	_	_	_
경북	_	해당 없음	_	_	_	_	_	_
경남	_	해당 없음	_	_	_	_	_	_
제주	_	해당 없음	_	_	_	-	_	_

- \* 당사는 포스매출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6개월이상 영업한 16곳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2곳 산정제외)
- \* 매출액은 가맹점당사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꼬레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꼬레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8	1469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예치기관을 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 증권을 확인 후 가맹금을 당사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서울보증보험 ]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맛나푸드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내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30일소요		

#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꼬레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 표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은 없습니다.
-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인테리어	업체미지정	55,000	1,833	-계약시: 50 % -중도금: 30 % -완료시: 20 %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간판	협력업체	2,200	_	-설치 3일 전: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주방집기,기자재	업체미지정	27,500	_	-설치 3일 전: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의탁자	업체미지정	2,750	_	-설치 3일 전: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총계		87,450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 드시 모델점을 방문하는 등 당사와 협의하여 [꼬레랑]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본

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인력파견 등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일금 삼십삼만원(₩330,000)정<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별도사항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상하수도 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화장실, 냉난방기, 음향기기, 각종 인허가

### ※ 유의사항

-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1 가맹점 사업사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언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8세 이상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총계		_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브랜드광고, 서비스/상품광고시 전체가맹점이 광고비50%를 부담	발생시 공지	반환안됨	광고비용 으로소요	산출근거 서면제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_	_	_	-	_	가맹점사업자 자율
점포환경 개선비용	_	_	_	_	_	가맹점사업자 자율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금의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_	-
정기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3일전	반환안됨	교육비용소요	_
비정기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3일전	반환안됨	교육비용소요	-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차액가맹금 지급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3)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운영관리	<ul><li>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li><li>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li></ul>	수시	당사의 임직원	
회계관리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 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판매량조사	- 가맹점의 판매량 조사를 통한 매장의 특 성 이해	수시	당사의 임직원	_
레시피관리	- S/V 또는 M/V를 통한 매장의 균일한 레 시피 관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시설관리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위생관리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 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 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 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 니다.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8조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 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4)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꼬레랑]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 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꼬레랑]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 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 집, 홍보매뉴얼, 전산 및 매장관리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꼬레랑]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옛날통닭			
순살양념치킨			
파닭		1회 위반 : 구두 경고	
닭똥집야채튀김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	가맹사업법의 해
골뱅이무침	등인 일시 않는 성품는  판매할 수 없음	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지 절차 준용
왕새우튀김		계약 해지	
먹태구이			
모듬감자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 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다른 가맹점 사업자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및 제품	- 민 파메한 스 언스니다	
	및 판배알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서면통지)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이를 어조 병이	동일한 업종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치킨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꼬레랑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500m (대학교, 역세권, 대형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 기타 특수상권의 가맹점은 거리 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꼬레랑]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일반소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꼬레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일반소매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기간

[꼬레랑]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성와에 관한 법률 제 13소 및 같은 법 시행당 제 14소에 따라 귀하메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 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 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①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4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은 경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개점후 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상품·서비스의 대금지급을 연체 하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규정에 의한 광고비 분담 및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 부할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운영권 양도 행위를 하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25조 1항의 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비, 영업허가, 기타 영업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제25조 1항의 2호

관하여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약정한 상품/서비스의 주문, 품질기준 준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5조 1항의 3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제25조 1항의 4호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5조 1항의 5호

###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25조 2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5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	

E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 H려운 경우	다리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2

다.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25조 4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라.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은 후 본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당사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양도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신규가맹계약 조건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 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 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 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 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_	_	_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_	-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받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수 탁인 또한 같습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มอ
치킨을 판매하는 [꼬레랑]과 동일업종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TEL 032-471-3336)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꼬레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협의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 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메뉴,조리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사업본부
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

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 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브다저치	비고
구군	8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미갶
	브랜드광고	50%	50%	산출의 근거를	
전국광고	서비스/상품광고	30%	(전체가맹점)	서면을 통해 제시	온오프라인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 2) 가맹점사업자의 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 만, 판촉 활동을 위한 판촉물 제작시 [꼬레랑]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11.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꼬레랑]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영업비밀유지 의무, 계약 존속 중 경업금 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5.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결리는 시간은 약 45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_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_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_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0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_
가맹금 예치	- 가맹금 당사 입금(당사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기 에 가맹금예치의무가 없습니다)	D-26	_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	_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5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1	_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_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되는 실비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오픈지원	닭100수 화분1개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최초오픈시	해당금액 전액지원	-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

		통상의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	경영지도	
됩니에 대한 거여지도	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비용을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초과한	
	고 이를 설명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꼬레랑]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꼬레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험전 교육	메뉴교육 조리교육 홍보마케팅 가맹점운영의 전반적 교육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개점	정기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 실습교육 (정기)	교육실시 3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필수교육
이후 교육	비정기교육	영업방침 /신메뉴교육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 실습교육 (비정기)	교육실시 14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꼬레랑]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고
개점전	선 교육	3일	없음	_
개점	정기교육	1일	실비	
이후 교육	비정기교육	1일	실비	_

###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3년도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มอ
-	_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 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